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31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차규근
이해민 · 강경숙 · 김준형
신장식 · 서왕진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을 수사기관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의뢰 및 수사 진행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의 범위를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및 제53조의3).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제2항 전단 중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53조의3제1항제2호 중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의3(비위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생략)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이하 “비위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u>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u> (이하 “수사 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2조의3(비위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수사기관-----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 -----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생략) 2. <u>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u>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3. 4. (생략) ② (생략)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수사기관</u>----- ----- ----- ----- 3.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